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4가단527879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가영현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11. 12.

판결 선고2024. 12. 10.

주 문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95,620,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2, 3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195,620,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 부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청구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의한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장래에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50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이근영

별지